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류오염손해보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 변경〉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01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1
IV. 검토의견	3
1.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 변경	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7일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

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한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의 신설을 전제로, 유류오염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에 전속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 ----- ----- -----해사전문법원에 전속한다.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에</u> 전속한다. ③ (생략) <u>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u> <u>은 뚜렷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같은 사고로 생긴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u>	----- -----<u>해사전문법원</u>-----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해 있음¹⁾.

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①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이하 “책임제한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그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 그런데, 개정안은 국내 해양사고사건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유류오염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에 전속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²⁾, 해사전문법원이 신설될 경우 해양사고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해사사건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며, 해사법 관련 지식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 특허소송과 같이 별도의 전문법원을 설치할 만큼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판 수요가 필요한데³⁾ 해사사건의 수가 그만큼 많지 않고,

이에 비해 별도의 해사전문법원이라는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중임.

- 참고로 해사전문법원의 신설과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참고로, 지난 제20·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3) 2022년 기준 가사소송사건은 총 41,966건, 행정소송사건은 총 21,906건, 지식재산소송사건은 총 562건이 각각 접수되었음(제1심 접수 기준)

으로, 관련 법률안의 심사 상황에 맞춰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

[표] 관련 법률안 현황

관련 법률안	제안자	의안번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22010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22010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22010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220102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2201019

□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사건을 전담하는 해사 전문법원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유조선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은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8